

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0. 18 (화) 평창군수(재무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05. 10. 25(화)

다. 상정일자 : 2005. 10. 25(화) 제12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 10. 25)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김학근 기획감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, 법률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문구를 새로이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

-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,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감면
 - 전용면적 40㎡ 이하 30년 또는 50년 임대주택 : 재산세·도시계획세 면제
 - 전용면적 60㎡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: 재산세 50% 경감
 - 전용면적 149㎡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: 재산세 25% 경감
-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,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감면
 - 전용면적 40㎡이하 30년 또는 50년 임대주택 및 공무원을 위한 임대목적 주택 :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면제

- 전용면적 60㎡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: 재산세 50% 경감
- 전용면적 85㎡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: 재산세 25% 경감
- 「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이 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개정되어 관련조문 및 문구 수정
-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연면적 85㎡이하 주택 부속토지 재산세 세율 1000분의 1.5로 개정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가. 본 조례안은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, 상위법령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문구를 새로이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

나.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
- 먼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
 -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,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
 - 전용면적 40㎡ 이하 30년 또는 50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,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
 - 전용면적 60㎡ 이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은 재산세 50%를, 전용면적 149㎡이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25%를 경감토록 각각 개정하였고
 -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,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
 - 전용면적 40㎡이하 30년 또는 50년 임대주택 및 공무원을 위한 임대목적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

- 전용면적 60㎡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재산세 50%를
전용면적 85㎡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25%를
각각 경감하였고

○ 「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이 「재래 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및 문구를 수정하였으며

○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, 주택에 대하여는 “주택분 재산세”가 적용되므로,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 조례의 사문화와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

-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연면적 85㎡이하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.5로 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다. 이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, 기타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